

제29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부록)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2년 4월 1일
- 발 의 자 : 이시복·김규학·김재우·김대현·박우근·윤기배·윤영애
이태손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4월 5일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제안이유

- 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구·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1)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2)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
- 3)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4)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의정활동 보조기구·보조 서비스의 제공,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를 하도록 함(안 제6조).
- 5)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제안취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¹⁾를 가진 대구시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보조기구·보조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안되었음.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을 정의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마련에 대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물 보강, 의정활동 보조기구 제공 등 지원 범위에 대하여 정리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과 관련해 보조인력의 신분(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과 보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1)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고 분류되는 장애인

□ 검토결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²⁾,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³⁾ 및 제11조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과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미 13개 광역의회⁵⁾에서도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가 운영중인 바, 이에 시의회에서도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형식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위원회 배정’에 대한 우선적 고려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의 추천으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미운영 : 대구, 세종, 충북, 경남)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고 규정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⁶⁾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에는 「대구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시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1항⁷⁾에 따라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으므로 정원 확보 등의 행정적 조치를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하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원 선임과 개선을 위한 본회의 개의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